

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게정조레안

의안 번호	67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07. 5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가.제명 변경

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사항이 추가됨에따라 “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”를 “파주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”로 제명을 변경하고자함. (안 파주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)

나.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

우리시의 경우 토지가격 등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폐기물처리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의 장기간 적체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 발생이 우려되어 폐기물처리지침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 주변의 여건,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허가업무처리와 필요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 (안 제10조의2)

파주시조례 제 호

파주시 생활폐기물관리예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 생활폐기물관리예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중 “생활”을 삭제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폐기물처리업의 허가)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, 도로교통 사항,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,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환경보호과 ☎ 940-4482
입안자	환경보호과장	박철순
	폐기물관리담당	박재진
	담당자	김부진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u>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</u> <u>제10조의2(폐기물처리업의 허가)</u> <u>(신 설)</u>	<u>파주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</u> <u>제10조의2(폐기물처리업의 허가)폐기</u> <u>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</u> <u>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</u> <u>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</u> <u>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,</u> <u>도로교통 사항, 주변환경에 미치</u> <u>는 영향,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</u> <u>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</u> <u>할 수 있다.</u>

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인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예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예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제명변경

- 폐기물처리업 허가예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“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”를 “파주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”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(안 파주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)

나. 폐기물처리업 허가예 관한 사항 신설

- 우리시의 경우 토지가격등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폐기물처리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의 장기간 적체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발생이 우려되어 폐기물처리지침 및 대법원 판례예 의거 주변의 여건, 환경예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허가업무처리와 필요시 허가예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(안 제10조의2)

□ 검토의견

- 경기북부지역은 토지가격등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폐기물처리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의 장기간 적체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업체간 과다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 등으로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어,
- 폐기물처리지침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 주변의 여건,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과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, 제명 또한,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“생활폐기물”을 “폐기물”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